

2016 ~ 2020

# 지방예산낭비신고 사례집

[ 2020. 12.]





2016 ~ 2020  
지방예산낭비신고  
사례집

[2020. 12.]



# Contents

1

Chapter

공사

|                            |    |
|----------------------------|----|
| 01 도로 보수공사 중복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 6  |
| 02 민간운영 놀이시설 내 공중화장실 신축 지원 | 7  |
| 03 해상 시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우려    | 8  |
| 04 비점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실          | 9  |
| 05 순환로 실개천 부실 관리           | 10 |
| 06 인도 시설 재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 11 |
| 07 연결도로 없이 준공된 교량 방치       | 12 |
| 08 부분 정비공사 후 재포장공사로 예산낭비   | 13 |
| 09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인도 철거 후 원상복구 | 14 |
| 10 주차선 도색작업 후 도로포장공사 시행    | 15 |
| 11 공사완료 후 잉여자재 방치          | 16 |

2

Chapter

물품구매·계약

|                           |    |
|---------------------------|----|
| 0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미조정     | 18 |
| 02 시설관리공단 간부에 피복구입 교환권 지급 | 19 |
| 03 민간투자 불확실한 리조트단지 기반시설공사 | 20 |
| 04 행정타운 매매계약 부적정 및 예비실 방치 | 21 |
| 05 예비비로 미술품 구입 부적정        | 22 |
| 06 행정선 건조계약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 23 |

3

Chapter

보조금 등 지원

|                              |    |
|------------------------------|----|
| 01 허위근무를 통한 인건비(보조금) 부정수급    | 26 |
| 02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부당 퇴직금 적립     | 27 |
| 03 육아나눔터 상근직원 활동비 중복지원       | 28 |
| 04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적 사용          | 29 |
| 05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 30 |
| 06 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보조사업 부적정     | 32 |
| 07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부적정    | 34 |
| 08 희망택시 부정이용                 | 35 |
| 0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투자 실패          | 36 |
| 10 문화재구역내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낭비     | 37 |
| 11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 38 |
| 12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39 |
| 13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40 |
| 14 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운영 지원 부적정     | 41 |
| 15 농민단체 협의회 해외연수 부적정         | 42 |

|                          |    |
|--------------------------|----|
| 16 농기계 수리비 보조금 부정수급      | 43 |
| 17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 부당 지급     | 44 |
| 18 경로당 운영비 사전 일괄지급       | 45 |
| 19 경로당 TV이용료 중복지원        | 46 |
| 20 아파트 경로당 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 47 |

**4 축제·행사**

|                              |    |
|------------------------------|----|
| 01 축제 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 50 |
| 02 어린이축제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 51 |
| 03 겨울축제 인공눈 과잉생산 방치          | 52 |
| 04 해맞이 행사 시 풍선날리기 폐해         | 53 |
| 05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준공행사 개별추진 | 54 |

**5 공유재산 및 시설 운영·관리**

|                             |    |
|-----------------------------|----|
| 01 강변 조명등 운영 예산낭비           | 56 |
| 02 공원 내 신축 화장실 방치           | 57 |
| 03 노후 관광호텔 매입 후 철거로 예산낭비    | 58 |
| 04 행정복합타운 준공 후 하자보수 등 운영 지연 | 59 |
| 05 박물관 건립 후 빈약한 전시물 등 부실 운영 | 60 |
| 06 건물 매입 후 지방의회 승인 없이 철거    | 61 |
| 07 이용하는 주민이 없는 만화도서관 방치     | 62 |
| 08 공용버스터미널 준공 후 다른 용도로 사용   | 63 |
| 09 노인정 및 마을회관 불법 임대         | 64 |
| 10 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마을회관 활용   | 65 |
| 11 야외 운동기구 이용률 저조 및 관리 부실   | 66 |
| 12 노후화된 운동기구 방치             | 67 |
| 13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근린공원 자전거 거치대  | 68 |

**6 일반행정·기타**

|                           |    |
|---------------------------|----|
| 01 공유농업활성화 사업 예산낭비        | 70 |
| 02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방법 개선     | 71 |
| 03 개인 펜션 수영장에 경로당 물 사용    | 72 |
| 04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예산편성 부적정   | 73 |
| 05 지방공기업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      | 74 |
| 06 예산으로 조성한 수목을 개발사업으로 훼손 | 75 |
| 07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홍보 및 운영 미흡 | 76 |

**부록**

**국민신문고 신고방법**

77



Chapter

01

# 공사

- 01 도로 보수공사 중복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 02 민간운영 놀이시설 내 공중화장실 신축 지원
- 03 해상 시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우려
- 04 비점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실
- 05 순환로 실개천 부실 관리
- 06 인도 시설 재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 07 연결도로 없이 준공된 교량 방치
- 08 부분 정비공사 후 재포장공사로 예산낭비
- 09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인도 철거 후 원상복구
- 10 주차선 도색작업 후 도로포장공사 시행
- 11 공사완료 후 잉여자재 방치

# 01



## 도로 보수공사 중복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 예산낭비 신고내용



- OO구청에서 몇 달 전 도로 바닥에 속도제한 표시 도색을 함. 그러나 1달도 지나지 않아 도로 아스팔트를 전면 재포장하였음
  - 그리고 일부 도로에는 속도제한 표시 도색을 다시 진행하였음. 당초부터 도로 재포장 계획이 있었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로 재포장 이후에 속도제한 표시 도색을 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판단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구청 내 속도제한 표시 도색 담당부서와 도로 포장공사 담당 부서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함
  - 앞으로는 공사 시행 전 관계 부서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관련 예산이 중복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음

# 02

## 민간운영 놀이시설 내 공중화장실 신축 지원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군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놀이 시설에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 공공부지도 공공시설도 아닌 곳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놀이 시설로부터 놀이시설 안에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군 소유로 등기이전한 후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는 꼼수를 부림
- 특히 화장실은 놀이시설 내부에 신축되는 데다 해당 놀이시설은 향후 입장료를 받고 놀이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장 내부에 공중화장실이라는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이나 되는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바 입장료 등을 받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 내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 바람

※ 해당 예산은 ○○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주)○○○○○ 농업회사법인이 추진 중인 ○○테마파크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 소지가 있어, ○○군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는 등 재검토 요청

※ ○○군은 추경예산에서 4억 5천만원 전액砍감

# 03

## 해상 시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우려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에서 발주해 ○○도 바닷가에 30억원을 들여서 발주한 공사현장이 공사감독의 소홀로 부실공사로 시공 중임
- 해상에 기둥을 세워서 기초를 만든 후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도면(시방서)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기초부터 부실공사가 되고 있음
-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벌써부터 강관파이프에 녹이 슬고 강관파일에 설치·시공되어야 할 볼트 작업도 없이 용접으로 시공함으로써 부식이 시공 도중에 발생할 수 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강관파일 기울어짐 등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안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점을 확인
- 이에 ○○시는 공사 일시중지 및 별도 전문기관을 통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재시공)할 계획이며 안전진단 및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음
- 향후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사 감독 등 건설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향후 준공 후에도 하자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

# 04



## 비점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실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준공된 지 4개월여밖에 안 된 교량 입구의 인도 일부가 수차례 유실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15~17일 사흘간 ○○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시 ○○동에서 ○○랜드 테마파크 사업장을 연결하는 ○○대교 진입부분 인도 아래 토사가 무너지면서 가로 1~2m×세로 5m 규모의 인도블록 포장이 2~3m가량 내려앉았음
- 인근 주민들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유실 사고라며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도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교량의 아스팔트 유제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대교의 92개 배수구에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였으나, 지난 5월 중순 ○○지역 집중호우 시 비점오염방지 시설에 설치된 유제흡착망에 다량의 아스팔트 유제가 고착되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우수가 범람하여 토사 유실 등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배수관련 설계 또는 시공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집중호우를 대비한 비점오염방지 시설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임
- 또한 유실구간 보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없었고, 향후 ○○대교 개통시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예산 소요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추후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도에 요청

# 05

## 순환로 실개천 부실 관리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 ○○구 ○○대로변 ○○순환로 실개천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일부 구간에서 개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살펴본 결과, ○○대로 ○○공원 사거리 ○○은행 앞 유수를 위한 물 공급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동절기에는 항상 오물로 가득 차 있음
- 봄이 되면 청소 후에 물을 공급하여 실개천을 유지해왔는데 지금 보니 화단으로 변경·조성되어 있음
- 개천 하부는 이미 물도 흐르지 않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 해당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대로 실개천은 2010년도에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조성하였으며, 주변 지하수를 이용하여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음
- 이중 실개천의 하단부(종점)에 있는 수경시설은 2015년도에 화단으로 조성하였음
- 또한 실개천 주변의 오물 등 쓰레기는 현지조사 시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실개천을 운영하지 않는 시기(동절기 등) 등에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쓰레기 등으로 주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당초 실개천을 조성한 사업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구에 청소, 정비 등 주변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

# 06

## 인도 시설 재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기공사(○○아파트(○○연립) – ○○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2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도(○○연립 앞) 등 시설 재공사, 화단 전량 폐기 및 가로등 파손 등의 사항은 예산낭비로 관련 공무원의 배상 및 신분상의 조치 필요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인도 구간 재공사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으나,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주민 및 관할 경찰서의 추가 사고예방을 위해 ○○연립 앞 인도 정비 필요 의견이 있어 ○○시가 기존의 공사했던 부분을 다시 공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예산낭비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도 재공사 시 당초 공사에 신설된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전량 재활용하였고, 화단에 조성한 식자재 및 울타리는 ○○동 주민센터에서 회수 보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부 인건비가 지출되어 예산낭비 여지가 있어 보이고, 가로등 파손은 사고원인자가 보험처리 등으로 전액 복구비용을 부담했음
- ○○시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

# 07

## 연결도로 없이 준공된 교량 방치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는 기존 교량이 너무 좁아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량을 놓았으나, 새로운 교량이 기존 교량보다 1~2m 높은데다 진입로가 짧고 경사가 심해 이용할 수가 없어 4년 동안 방치되고 있음
- 기존 교량도 2016년에 B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마을 진출입시 차량무게가 50톤 이상 된 차량의 진출입에 문제가 있어 공사가 진행 중이나 초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기존 ○○교와 ○○ 1교의 교량높이를 맞추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교량 건설 요청

### 신고내용 처리결과



- 2014년 2월에 준공된 ○○교는 교량으로 진입하는 연결도로가 없어 현재까지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10월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임을 확인
- 또한, ○○시에서는 ○○1교 설치 시 교량설치를 제외한 연결도로가 없어 준공 후 현재까지 설치된 교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하천관리청인 ○○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의뢰

# 08

## 부분 정비공사 후 재포장공사로 예산낭비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구 ○○중앙로 ○○번길'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며칠 전 도로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도로공사를 한 것은 명백히 세금 낭비임
- 며칠 전(15일 내) 부분적으로 아스콘포장을 했고, 라인 마킹도 새로 했었는데, 오늘 또 도로(아스콘) 포장공사를 함
- 보름 전 공사도 멀쩡한 도로를 공사한 것 같은데(부분적 보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감), 오늘 공사계획이 있었으면 보름 전 공사는 하지 않았어야 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구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3월 22일경 과속방지턱과 그 주변 도색작업 등 정비를 하였으며, 공사 후 주변 지역 정비 민원에 따라 4월 18일경 ○○동 ○○번지 주변 노후 도로를 정비한 것을 확인
- ○○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 '과속방지턱 등 주변 도로 상태를 같이 검토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09



##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인도 철거 후 원상복구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 ○○동에 있는 '○○고 진입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고, 공사 후 이용자의 불편이 오히려 많아졌으며, 교통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 예산낭비 사업이므로 공사 중지 필요
- 또한 ○○아파트 앞, ○○연립 앞 등에 많은 신호등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예산낭비로 판단되므로 조치 필요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교 공사와 관련, 예산낭비 신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없는 것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후, 위 공사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존 공사 중 철거한 인도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결정
- 이와 관련 행안부는 위의 원상복구 시, 인도에 노출된 철근의 산화작용 등에 의한 녹(緣)으로 추후 교량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줄 것을 ○○시에 요청

# 10



## 주차선 도색작업 후 도로포장공사 시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의 경우 아스팔트 도로포장공사가 기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도로포장공사 일주일 전에 주차구역, 주차선 등 공사
- 일주일 후 새로 작업한 주차선을 모두 갈아엎고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예산낭비 초래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관련 공무원이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타 부서 협조공문에 대한 공람 소홀로 발생
-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엄중 주의 조치

# 11



## 공사완료 후 임여자재 방치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에 따르면,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잉여분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동 예규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잉여자재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완료 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도로변 주변에 수많은 잉여자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바 사용가치가 있는 자재는 차후 공사시 사용 또는 관리 요망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도로변 폐자재 및 잉여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회수자재는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 조치할 계획

Chapter

02

## 물품구매·계약

- 0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미조정
- 02 시설관리공단 간부에 피복구입 교환권 지급
- 03 민간투자 불확실한 리조트단지 기반시설공사
- 04 행정타운 매매계약 부적정 및 예비실 방치
- 05 예비비로 미술품 구입 부적정
- 06 행정선 건조계약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 01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미조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립 ○○수련관 보수공사 시 당초 설계보다 면적이 축소되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시공하였고, 과다계상 된 준공내역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기성금액을 지출
- ○○시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해야 할 위탁업체(수련관)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계약업체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과다계상된 기성금액을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해당 공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방계약법 미준수, 업무담당자 업무숙지 미흡 및 소홀, 예산 과다집행 등 여러 위반 사항을 확인
- 수련원 수탁기관인 (사)○○○○에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 절차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권고

# 02

## 시설관리공단 간부에 피복구입 교환권 지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공단의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리한 편성으로 인해 너무 과다한 예산이 배정되었고 이번 건 역시 1인당 20만원, 총 163명의 피복비 구입비 3,260만원을 요구한 공단에 ○○군에서 그 금액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여 과도한 예산을 사용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피복비 구입 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계획서와 절차 불일치, 간부 교환권 지급 등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상 주의’ 처분
- 또한, 향후 피복비 관련 예산편성은 자제 및 철저를 기하고 실업무자 근무복 위주로 피복비 반영

# 03

## 민간투자 불확실한 리조트단지 기반시설공사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군은 국고보조금 및 군예산 40억원을 투입하여 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억원 이하인 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규정을 어기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군민들의 의구심만 더해가고 있음
- ○○단지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부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조트기반시설 조성허가를 내주었는데,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에 대해 공공기반조성공사를 하고,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군 자료검토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개입으로 보기 어려움
- 리조트 단지 조성은 당초 민간업체의 투자를 받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자 리조트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우선 공사해 예산이 편성된 국비와 지방비를 집행함
- 다만, 당초 민간자본을 투자 받아서 진행해야 할 사업을 공적예산만 투입하여 일부 기반시설만 완공하였고, 민간투자는 현재까지 지연되어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예산낭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등이 필요해 관련부서에 조사 의뢰

# 04

## 행정타운 매매계약 부적정 및 예비실 방치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와 LH간 ○○공사비 계약관계가 잘못되어 464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
- 계약 당시 행정타운 3개 층을 ○○시가 매입하기로 계약하여 3개 층 중 2개 층만 시가 사용하고 1개 층은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안 됨.  
앞으로도 주변도로공사, 주차장 등 시설물 공사비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낭비 우려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 행정타운의 ○○시-LH공사간 계약에 관한 사안은 감사원에서 2015년도 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 시, 행정타운 매매계약(○○시-LH공사) 및 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기 지적된 사항임
- 예비실로 방치하고 있는 1개 층은 201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수요에 부합한 시설만 입주토록 재선정하라고 지적하여 예비층(3층)이 발생한 것으로 ○○시에 세부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 05

## 예비비로 미술품 구입 부적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군에서 예비비 5억원을 ○○글씨(작품) 구입비로 집행(○○신문 참조)
- 본 행위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운영지침에 위배된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고발은 물론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보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군에서는 문화예술의 융성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후 전시에 필요한 작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측으로부터 업무협약서 이행촉구 및 협약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번복으로 신속하게 작품을 매입하지 않으면 미술품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명시이월 예산 5억원(기타보상금)을 불용처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술품 기증예정자와 미협의로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로 보기 곤란한 미술품 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사의뢰

# 06



## 행정선 건조계약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군이 예산 35억원을 들여 건조한 행정선이 업자와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 처리됨
  - 당초 최대속도 35노트, 승선인원 50명으로 선박 건조 계약을 맺었으나, 설계변경 후 최대속도 24노트, 승선인원 40명으로 계약조건과 다르게 선박이 건조되었고, 2회의 설계변경으로 5억원이 부풀려 혈세가 낭비됨
  - 관련된 ○○군과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필요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감사원에서 ○○군의 “다기능 행정선 건조계약 및 책임·감리 용역 감독업무 부적정”으로 준공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및 관련 계약담당공무원 주의 촉구
-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을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강구 하도록 권고



Chapter

# 03

## 보조금 등 지원

- 01 허위근무를 통한 인건비(보조금) 부정수급
- 02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부당 퇴직금 적립
- 03 육아나눔터 상근직원 활동비 중복지원
- 04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적 사용
- 05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 06 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보조사업 부적정
- 07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부적정
- 08 희망택시 부정이용
- 0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투자 실패
- 10 문화재구역내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낭비
- 11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 12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13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14 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운영 지원 부적정
- 15 농민단체 협의회 해외연수 부적정
- 16 농기계 수리비 보조금 부정수급
- 17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 부당 지급
- 18 경로당 운영비 사전 일괄지급
- 19 경로당 TV이용료 중복지원
- 20 아파트 경로당 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 01



## 허위근무를 통한 인건비(보조금) 부정수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과 공모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꾸며 인건비(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음
- 철저한 감사로 그동안 부정수급된 임금을 회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벌도 이루어 지길 요청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보조금(인건비) 약 1,400만원을 환수 조치 하였으며, 보조금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

# 02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부당 퇴직금 적립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구 소재 복지시설 시설장이 사회복지법 규정을 어기고 매월 월급에 더해 퇴직금 명목으로 직원들 퇴직금과 함께 본인의 퇴직금을 주거래은행에 적립
- 사회복지법인 규정에 이사장은 전별금은 일부 줄 수 있으나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
-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공익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인데, 월급에 퇴직금까지 매월 적립하고 있다면 운영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부도덕하다고 생각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퇴직적립분을 정산, 2019년 10월부터 개인 연금형으로 퇴직금 정립방법을 변경하여 1,03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
-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명령) 및 부당 퇴직적립금을 시설 회계로 여입 조치하고, 2차 위반 시 2차 개선명령, 3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명령 할 것을 고지

# 03

## 육아나눔터 상근직원 활동비 중복지원



### 예산낭비 신고내용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나눔터 사업과 관련하여 상근직원이 활동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음
- ○○육아나눔터 2020년 예산 18,300천원 중 종사자활동비 예산이 9,900천원으로 50% 이상을 차지
- 시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한다면 당연히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나 센터의 상근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면 센터 내부에서 업무분장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상근인력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모든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 월 80여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센터 상근종사자의 활동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20년 「○○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등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완·수정하여 시·군에 통보('20. 4. 3.)
- 향후 상근직원에 추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04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적 사용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비(보조금)에서 모 법인과 법인 대표 가족이 거주하는 건물의 전기요금과 지하수 요금 등 공공요금을 약 4년 넘게 납부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회계에서 부담한 공공요금을 환수조치 하시기 바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법인과 개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함

# 05

##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총9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함 (체육대회 참가비, 산불예방 순찰활동)
- 권익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 선심성 보조금 지원도 확인(행정동우회에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총 1,8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이 동우회는 1,000만원 이상을 식대와 차량 임차료로 쓴 것이 확인됨)

### 건의사항

-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지원근거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내용 추가 검토 필요
- ※ 퇴직공무원을 위한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
- 해당 지자체 이외에도 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 처럼 일부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
  -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감시단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05



##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 신고내용 처리결과

-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조례 무효 확정되었으나 일부 자치단체 조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도개선 권고(47개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시행기관 대상) :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중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  

※ 위 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수용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행정동우회 관련 보조금 집행 현황 별도 조사 병행)
- 예산편성 유의사항 안내 등(전 지자체 통보) :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수록하고, 향후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숙지할 것을 안내
- 산불예방활동 감시 등 순찰예방활동이 여러 단체에서 진행할 경우, 보조금 등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동우회 등 퇴직공무원 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통지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군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해 자기자본 없이 은행 담보대출로 구입한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산처분의 제한규정 위반, 자율방범대의 터미널 건축물 용도외 사용 등 예산을 낭비
- 자율방범대 사무실의 터미널 건축물 용도외 사용 :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지원은 없었으며, 택시 쉼터를 터미널 부지 내에 별도 설치(2014년 도비 보조사업), 2015년 터미널 현대화사업에 자율방범대 신축계획 포함(2천만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를 위반하여 2014년도 보조금지원 후 담보제공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억4천만원 변제(2015)
- 2014년 리모델링사업을 2015년 2월 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서류 제출 지연으로 2015년 11월 보조금 정산 검사 완료
- 지역주민 이용편의를 위해 2014년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완료 후 2015년 보조사업 지원 결정 지연을 이유로 신고 당시까지 1층을 폐쇄하고 임시건축물(임시매표소, 대합실, 화장실 등)을 사용하도록 방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

# 06



## 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보조사업 부적정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군에서는 1일 버스운행 94회(시외버스 39, 농어촌버스 55), 이용객 150명인 터미널 2층을 이용고객 및 주민편익시설,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2015년 1회 추경)
- 매표수익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해 터미널을 계속 운영할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임대수익을 위해 2층에 상업·업무시설 증축
-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은 ○○공용버스터미널현대화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자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 증축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2015년도 터미널 현대화사업(승차장 비가림 및 디딤대, 주차장, 가로등 등)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과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

# 07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부적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도 ○○시는 버스업체 2개 여객사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였음
  - 해당 노선은 재해 등으로 도로유실 및 범람, 폭설로 인한 빙판 등으로 통행이 불가피할 때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되어야 하나, ○○여객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차례 시와 협의 없이 벽지노선을 미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 이에,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조사 및 관리를 하여 보조금 지원이 적정한지 검토 바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은 실제 운행 여부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단축 운행한 구간은 미운행으로 간주, 기지급한 손실보상금 중 2017년도분 83만 8천원, 2018년도분 253만여원을 환수조치함
  - 또한, 사전안내가 미흡한 상황에서 협의 없이 업체 자의적 판단으로 한 버스 단축운행은 부적정한 사항으로,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경고처분 하였음

※ 2년간 지원한 보조금 1,557만여원 중 337만원을 환수조치

# 08

## 희망택시 부정이용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읍면 단위 버스 운행이 감소된 지역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 운행시간 전에 출근하면서 희망택시를 이용
- 하지만, 병원 주차관리원인 2명의 파신고인이 출근시간이 07:30분이어서 06:10분 버스 첫차를 타면 직장 출근에 아무 지장이 없음에도 버젓이 희망택시를 이용 혈세 낭비

※ 농어촌 희망택시 :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택시비 일부(1,000원 가량)만 부담하고 차액은 지자체에서 보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기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희망택시 대상자에서 제외
- 또한, 희망택시 신청사항과 다르게 06:30분까지 출근하는 조기 출근일이 아닌 때에도 조기출근 시간에 맞추어 추가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희망택시 이용을 제한

09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투자 실패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투자하면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명시하지 않아 투자금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하나, 회수는 미지수임
- ○○시는 66억원을 투입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기관인 한국환경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실패통보를 받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 등을 협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아 투자금 손실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에서 참여한 동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연구기관을 ○○공단으로 하여 자체 보급형 중·소형 생활폐기물 가스화 및 합성가스를 이용한 가스엔진발전 연계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R&D공모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36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임을 확인함
- 2010년 8월 ○○시는 참여의사 확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주관연구기관인 ○○공단과 2010년 10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던 과정에서 2016년 5월 사업의 성공조건인 신기술인증 신청이 되지 않아 최종 실패로 확정
-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결정됨에 따라 2016년 10월 ○○시에서 출연금 반환을 요청하고, 주관연구기관과 시공사간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판결 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및 ○○시 투자금의 출자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며, 환경부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10



## 문화재구역내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낭비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는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 안전진단 검사에서 불합격된 호텔을 매입하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회를 매입하여 복합센터를 신축
- 이번엔 구)○○극장을 매입하여 개인에게 억대를 들여 리모델링까지 하니 도대체 시장은 시민의 세금이 자기 쌈지돈인 줄 아는지 국비 70%라고 큰소리치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에서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시가지 상가공동화 우려 및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 활용을 요구하여 ○○전시관과 갤러리로 리모델링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비사업의 목적은 문화재구역안의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주택 등 지장물을 철거·정비하는 것인데 철거하지 않고 시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한 것은 당초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목적에도 맞지 않음
- 구)○○극장 매입 후 주변 지역과 함께 즉시 정비하였다면 리모델링을 위해 투입한 총 4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됨
-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통보된 건으로 향후 교부세 감액 심사에서 재정 패널티가 부여될 수도 있음

# 11



##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이 자녀를 허위로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정부보조금을 불법 수령 중에 있으니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 (감사)를 요청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2차례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보육교직원(담임교사)으로 근무 중인 1명이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을 확인
- 해당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2019년 3~4월간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였음

# 12



##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구에 거주하고 있는 ○○○은 부모님 형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월급의 일부를 빼돌리고 나머지를 받고 자신이 저소득인 것처럼 해서 저소득 수익금을 받고 있음
- 또한, 자신의 차도 어머니 명의로 돌려 사용하고 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차량등록원부 및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차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사용했다고 판단
- 소득 조사 결과 한 달 평균 지출금액이 800만원 이상이며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 등이 확인됨
- 미신고 소득 활동 및 기준 초과 차량 사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모든 급여서비스를 중지한 후 부정 및 부적정하게 지급된 생계급여 57백여만원 및 주거급여 16백여만원에 대해 보장비용 징수 결정

# 13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는 결혼식을 치른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면서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A의 배우자 수입이 기초수급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가 필요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기초생활수급자 A의 사실혼 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기소
-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A의 기초생계, 의료, 주거, 한부모 가족 자격은 중지되었고, ○○지방검찰청과 기초생활수급자 A가 주장하는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에 차이가 있어 추후 법원에서 판단하여 부정수급액 환수 예정

# 14

## 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운영 지원 부적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군 ○○대학교 ○○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운영(2012년~)과 관련하여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국·군비로 학비를 지원하는 등 군민들의 불만 고조

※ 정규대학 캠퍼스에 맞는 정규학과 미개설, 캠퍼스 기능 미약, 학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으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또한 이미 초고령화가 되어버린  
○○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군민들이 다수이므로 학구열은 있지만  
자격미달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극소수임. 이에 ○○군은 최소 인원을  
맞추는데 급급하여 어려운 생활고에 학구열을 가지고 생활하는 기초수급자나  
영세민에 속해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공무원이나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농·축협 직원들, 지역 기관단체장  
및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서민들의 혈세인 군 재정으로  
학비혜택을 받고 있음

- 이에 ○○군은 캠퍼스에 군민들의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감시가  
절실하다는 군민들과 재학생들의 쓴 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신고한 내용과 ○○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계약학과(농·생명과학과)의 신입생 지원자격 및 교육부  
내부지침,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

# 15

## 농민단체 협의회 해외연수 부적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 농민단체 협의회'라는 농·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단체(경영인 연합회, 유기농, 사과발전, 양돈, 한우, 농민회 등)의 해외여행을 중지시켜 주기 바람
- 매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 아래 후진국을 헐세로 가고 있는데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시장이나 농장 잠깐 들리는 게 전부이고 남은 일정은 일반 관광임
- 작년에 간 사람 올해도 또 가고 내년에도 가고 대체 ○○시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 됨
- 또 ○○시 ○○동에 위치한 농업인회관은 3층 건물이 반 이상이 비어 있는데 별관이라고 또 지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해외연수가 선진지 견학보다 일반 관광성이라는 신고에 대하여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일부 단체의 회장과 회원의 경우 작년과 올해 연이어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회원(2명)의 경우 자부담으로 실시 하였고 회원 3명은 중복으로 확인되었음
- 향후 해외연수의 경우 보조금 지원 시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대상자 선발 및 연수 내용의 충실도 등 해외연수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며, 농업인회관은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활용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

# 16

## 농기계 수리비 보조금 부정수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에서 2018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된 마을공동 농기계수리비 보조금이 마을 내에서 변칙적으로 집행된 바가 있음(정산서류 상 수리비와 실제 수리비가 다르며, 차액을 마을대표 측에서 환급 받았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수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 확인
-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실제 수리비가 286만여원임에도 당초 사업비인 566만여원으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였음을 통보받았음
- 이에 따라 부적정 집행금액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280만여원 전액 환수조치 완료

# 17

##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 부당 지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4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고급인력지원사업으로 석·박사 중심 R&D 인력을 채용한 기업의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과 관련하여 업체현황 허위신고, 서류를 조작하여 실제 교육 진행 없이 지원금만 수급함
  - 이러한 회사에 지원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바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사업 수행기관인 (재)○○에서는 해당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서류 검토 및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업체 교육강사 ○○○이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또한 교육을 미실시 하였음에도 교육훈련비(500만원)를 지급 받는 등 지원금 지급요건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 예정

# 18

## 경로당 운영비 사전 일괄지급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는 경로당의 도시라 할 만큼 도의 규모나 인구수에 비해 등록된 경로당이 많고 또 신축되고 있으나, 신축 등 수요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검토, 예산의 정당한 집행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만하게 집행
- 경로당 운영비, 물품, 냉·난방비 지원의 경우 필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채 과도한 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경로당 신축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이용정원 20명 이상 설치신고서 접수 시 추진, ○○경로당의 경우 회원명부 및 회의록 확인 결과 20명 이상의 이용자 참여를 확인했음
-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 ○○시는 각 경로당을 방문 경로당 규모에 맡는 냉난방기 용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설비함
- 운영비는 경로당별 이용자 명부 및 행복e음시스템의 주민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냉난방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전 지급하고 있음
- 다만, 경로당 명부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사전에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시는 추후 체계적인 경로당 신축, 지원을 위한 “경로당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비 지급 방식을 일괄 사전지급 방식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자체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 19



## 경로당 TV이용료 중복지원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군은 2015년부터 400여개 경로당에 TV이용료를 중복 지원하여 한 해 4,300여만원의 예산 낭비

- 현재 각 마을경로당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에서 TV이용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군은 군정홍보 방송인 '내고향 ○○TV'를 운영하면서 각 마을경로당에서 이를 시청하도록 하기 위해 군비로 2015년 2,100만원, 2016년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올해 역시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
- '내고향 ○○TV'는 ○○군이 제작비를 지원, ○○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데 각 마을경로당이 ○○방송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내고향 ○○TV'를 시청할 수 없자 예산 중복지원으로 인해 현재 상당수 마을 경로당에서는 기존에 시청하고 있던 유선 또는 위성 방송과 ○○군이 TV이용료를 지원한 ○○방송의 IPTV를 중복 시청하는 상황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군에서는 2015년도부터 경로당에 '내 고향 ○○TV' 방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었으며, 일부 경로당은 2개의 TV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1개의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조치

# 20



## 아파트 경로당 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관내 ○○단지 아파트 경로당이 구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관리실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정산서류로 제출하고 지원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의심됨
- ○○지구 경로당 난방비는 현재 아파트 공동난방비에서, 전기요금은 아파트 잡수익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경로당에는 직접 부과되는 바가 없음
- 이 사실은 경로당의 관리비 자체 내역으로 입증 가능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경로당의 2018년도 11~12월분 난방비에 대해 확인한 결과, 경로당에서는 난방비 보조금을 경로당 명의의 통장(아파트관리소 지원금 받는 전용통장)에 자체하여 경로당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회계장부 및 통장내역을 통해 확인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난방비를 징수한 사실 없이,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
- 난방비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난방비보조금 56만여원을 반납 조치하였고,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정 사용하도록 함
- 또한, 2019년도부터는 관리소에서도 일반 세대처럼 경로당에 난방요금을 부과하고, 난방요금 수납계좌로 정상납부 한 것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조치



Chapter

04

## 축제·행사

- 01 축제 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 02 어린이축제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 03 겨울축제 인공눈 과잉생산 방지
- 04 해맞이 행사 시 풍선날리기 폐해
- 05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준공행사 개별추진

# 01



## 축제 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장 축제에 수억여원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정작 그 뒤론 회계 결산은 커녕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사후 조치가 전혀 없어 비난을 받고 있음

※ ‘15년 시비(2억원)과 구비(1억6천만원) 등 모두 3억6천여만원을 축제와 행사운영비와 사단법인 ○○○축제조직위에 지급. 내용을 들여다보면 홍보비에 2,800여만원을 지역방송에 3,150여만원을 그리고 축제운영비로 7천여만원을 도합 보조금으로 모두 1억6천여만 원(시비 별도)을 지출 통장으로 지급하고 카드로 결재하면 그 내역은 너무도 잘 나타나는데 ○○구는 축제조직위측에 전달한 것은 돈이고 그 내역은 전혀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게 더 큰 문제임

- 이 같은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낭비 요인에 대한 예산 삭감을 확실하게 할 필요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장 축제를 위해 보조금 3억6천만원(시비 2억원, 구비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각각 보조금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규정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엄중 경고 및 담당자교육, 세출예산 편성기준 단가 미 준수에 따른 시정조치 및 반납 조치(36만 4천원)

# 02

## 어린이축제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어린이축제 지원 행사 관련 불공정 계약에 대한 조사 요구

### 신고내용 처리결과



- ○○행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기준 이하일 경우 사업자변경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축제 행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 집행 시 일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부서에 보조금 집행·정산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통보

# 03



## 겨울축제 인공눈 과잉생산 방지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 겨울축제에서 눈조각상을 만들고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눈을 생산함
- 그러나 ○○시는 인공눈 필요량을 잘못 예측하고 필요량보다 과잉 생산하여 인공눈 생산비용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된 인공눈을 종합운동장에 방치하여 조경수 및 시설이 훼손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가 인공눈 잔여량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여, 종합운동장 조경수 및 시설 훼손 등 470만원 가량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 이에 ○○시에서는 향후 축제 개최 시, 인공눈 생산 공간(거리) 확보로 시설물(조경수 등) 훼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인공눈 생산량도 행사 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게 준비하며 훼손된 조경수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체 개선방안을 제시

# 04



## 해맞이 행사 시 풍선날리기 폐해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에서 매년 1월 1일 개최되는 새해맞이 행사 중 풍선날리기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터진 풍선조각을 먹이로 착각한 동물들이 섭취 후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맑고 건강한 기운을 기대하는 새해맞이의 취지에 어긋남
- 환경오염과 생명위협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야기하는 풍선날리기 행사는 전면 취소 필요



### 신고내용 처리결과



-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향후에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행사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05



##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준공행사 개별추진

### 예산낭비 신고내용



- ○○대교 준공행사를 ○○시청, 2개 구청이 각각 별도로 진행하였고, 예산의 경우 ○○시 : 1억원, ○구 : 1억 2천만원, ○구 1억 2천만원 (예산낭비 논란 후 ○○대교 전망대 행사를 별건으로 하여 준공행사 8천만원, 전망대 행사 4천만원으로 분리) 집행
- 각 기관이 3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행사 내용 미확정
- 하나의 준공행사를 3개 공공기관이 별도로 준비하면서 기본경비 및 개별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행정력 낭비요소 존재

### 신고내용 처리결과



- 해당 3개 자치단체(○○시 본청, ○구, ○구)가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직접 위반한 사항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민 및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는 행사를 강행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3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 3개 자치단체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와 ○구가 추진 예정이던 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 주관 행사에 상호 협력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

Chapter

# 05

## 공유재산 및 시설 운영·관리

- 01 강변 조명등 운영 예산낭비
- 02 공원 내 신축 화장실 방치
- 03 노후 관광호텔 매입 후 철거로 예산낭비
- 04 행정복합타운 준공 후 하자보수 등 운영 지연
- 05 박물관 건립 후 빈약한 전시물 등 부실 운영
- 06 건물 매입 후 지방의회 승인 없이 철거
- 07 이용하는 주민이 없는 만화도서관 방치
- 08 공용버스터미널 준공 후 다른 용도로 사용
- 09 노인정 및 마을회관 불법 임대
- 10 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마을회관 활용
- 11 야외 운동기구 이용률 저조 및 관리 부실
- 12 노후화된 운동기구 방치
- 13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근린공원 자전거 거치대

# 01



## 강변 조명등 운영 예산낭비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설치된 조명등 간격이 짧은 것은 2m 정도 되는 것도 있으니, 조명등 전부를 점등하는 것과, 하나씩 간격을 두고 점등하는 것을 벚꽃이 만개했을 때 시험 가동해 보고, 간격을 두고 점등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하나씩 간격을 두고 점등하는 방안과 색상·명도·채도를 변경하는 방안 등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방문객들이 만족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 예정

# 02



## 공원 내 신축 화장실 방지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산 ○○공원 내에 ○○사라는 사찰이 있고, 이 사찰 아래는 2010년경  
지은 화장실이 있는데, 건축 이래 현재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고 폐쇄되어 있음

- 근처에 ○○산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화장실을 지어 방치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불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함이 아닌지 알고 싶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산 ○○공원 내에 위치한 ○○사는 급증한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지원 받아 전통양식의 목조 건축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였으나 등산객이 당초 예상보다 많고 물이 부족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임주지가 임의로  
구청에 사전 통보 없이 화장실을 폐쇄하여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구에서 화장실 신축 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식수와 화장실  
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그 수량이 예상치 5톤보다 훨씬 적은  
1.5톤에 불과하여 수세식 화장실 운영에 무리가 있음
- 향후 ○구에서는 ○○사의 새로운 물탱크를 이용하여 해당 화장실의  
수세식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수세식 변기를 물  
없는 변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 앞으로는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후의 예상 문제점들을 사전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03



## 노후 관광호텔 매입 후 철거로 예산낭비

### 예산낭비 신고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사용을 위해 노후 관광호텔을 타당성 검토 및 안전진단 없이 매입하여 예산낭비
- ○○시는 노후 관광호텔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 위해 매입 전 안전진단 실시도 없이 매입하였고 매입한 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최하위(E단계)로 나와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철거하고 다시 건립하기로 함
- 부지가 협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가능해 노인들이 이용하기는 곤란하므로 셔틀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매입대상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건물구입비와 건물 철거비 등 11억 412만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해 ○○시장에게 주의 촉구

# 04



## 행정복합타운 준공 후 하자보수 등 운영 지연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에서 ○면 행정복합타운\*을 신축하고 복지동(목욕탕)의 배수관 역류, 누수 등 하자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 것은 예산낭비임

※ ○○시는 지난 2013년 10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6002㎡ 부지위에 면사무소와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의 용도로 건립된 복지동과 농업인 상담인동, 의용소방서 등이 들어설 행정복합타운을 착공해 2015년 준공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 ○면 행정복합타운은 면주민센터, 복지동(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5년 준공하였으며, 복지동내에 설치한 목욕탕은 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개인에게 위탁운영한 시설로서 시설물의 잔은 고장과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부담으로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여 목욕탕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
- 현지 확인한 결과, 기존 시설물 고장은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시에서 면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탁운영자 선정한 후 2016년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 05



## 박물관 건립 후 빈약한 전시물 등 부실 운영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 ○구에 ○○박물관이 건립돼 있으나, 박물관 안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사진, 그림만이 게시되어 있을 뿐 실물 자료는 거의 없고 관리인도 보지 못했고 관람객도 없음
- 즉, ○○박물관은 전시물도 거의 없고 관리인, 관광객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런 곳에 박물관을 설치하고 운영비도 지출할 것을 생각하니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판단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박물관은 2015년 6월 준공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2016년 8월부터 ○○시 ○구로 이관되어 운영하는 시설로서 박물관내 전시시설관리와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공공일자리 나누미 및 단시간근로자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과 같이 박물관내 전시물이 다소 빈약하고 3층 체험관의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것도 있었으며, 방문객은 평일 기준 80~100명, 주말 기준 150~2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
- 다소 빈약한 전시물은 ○○시 ○구에 ○○○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던 어구 등을 기증받아 전시하는 방안과 파손된 체험시설은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층 쉼터 일부 공간은 카페 등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을주민단체에 임대하고, 박물관 시설도 함께 위탁관리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

# 06



## 건물 매입 후 지방의회 승인 없이 철거

### 예산낭비 신고내용



- 62억(토지 43억, 건물 11억, 기타 8억(철거, 폐기물처리, 광장조성)) 들여 매입한 멀쩡한 건물을 헐어 소규모 광장 조성
- 경매를 통해 5년 전(2010년) 29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군에서 54억원에 매수
- 시민단체 “낭비, 상급기관 감사 청구할 것”
- 대형 주차장 만든다더니 매입 직후 뒤바뀐 계획
- 11억짜리 멀쩡한 건물을 헐고 소규모 공터로 조성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군에서 취득한 (구)○○타운 부지는 행사장 입구에 위치하여 ○○축제 및 ○○엑스포 개최를 위해 ○○군에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지만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구)○○타운 건물을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철거한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

# 07



## 이용하는 주민이 없는 만화도서관 방지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구 관내에 ○○동 등 2곳에 만화도서관이 있는데, 2곳 다 비슷한 실정이나 그 중 1곳을 신고함
  - 지하철역 바로 옆 ○○길 시작 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 건립된 본 만화도서관은 개관식 이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으며, 관리도 소홀하여 쓰레기만 잔뜩 쌓여가는 실정임
  - ○○길은 주민들이 가벼운 운동 및 산책을 나오는 장소인데 그곳에 만화도서관을 건립한 것 자체가 세금낭비의 표본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구 ○○동 만화도서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길 입구에 주민과 어린이들이 만화를 보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 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 (자원봉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희망도서 수요조사 후 도서 확보, 주변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08



## 공용버스터미널 준공 후 다른 용도로 사용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는 ○○시내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고자 10여년 전에 버스공용터미널을 준공하였으나 주민의 생활권과 동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움으로 부지 및 버스주차 공간을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건물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
- 건물도 현재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비워 있는 상태로 이는 주민의 생활 또는 접근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몇 백억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짐작됨
- 즉, ○○시에서 ○○공영버스터미널을 조성한 후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예산을 낭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 기존 터미널은 부지가 협소하고 도시환경 저해, 교통체증 등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1990년 버스터미널 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착공하여 2004년 완공되었으며, ○○고속터미널은 2002년 중장기 도시발전 계획에 따라 1일 이용객 11만 명을 목표로 신축하였으나 신도시개발 취소, 고속도로 건설지연 등으로 2007년 말 1일 이용객이 1,300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터미널 운영업체 선정 입찰결과 유찰(7회), 기존 상권의 반대 등으로 대형유통시설 유치가 불가하여 터미널 이전을 못한 것으로 확인
- 터미널 준공 후 당초 예상에서 벗어난 환경 등으로 터미널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지만, ○○시에서 추가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터미널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2008년 4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후 ○○시설관리공단, 선거관리위원회, 사회단체(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 자율방재단,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일부 차고지는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서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음

# 09



## 노인정 및 마을회관 불법 임대

### 예산낭비 신고내용



- 노인정 및 마을회관은 군청 재산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임대 또는 민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 쓰고 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마을회관 불법임대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 예정이며, 노인정 민박 건은 시정조치 하였음
-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불법임대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며, 군청 지원금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 예정

# 10



## 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마을회관 활용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구가 국·시비 8억여원을 들여 경로당과 문화예술촌을 겸한 마을 회관을 지었지만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
- 마을회관 1, 2층에 있는 경로당이 계단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마을 노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마을회관은 당초 ○○경로당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건립 부지가 협소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곤란하였고, 기존 경로당보다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어르신들이 기존 경로당 사용을 희망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 마을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
- ○○마을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물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에서 주민의견을 재확인 후 전면 재검토하여 사용용도를 결정

# 11



## 야외 운동기구 이용률 저조 및 관리 부실

### 예산낭비 신고내용



- 하루에 1~2명 왕래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시골 마을회관 앞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녹슬어 가고 있음
- 운동기구를 아파트 단지나 큰 공원 등 젊은 이용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신고인이 지적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문제에 대해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운동기구가 일부 확인됨
- 군에서는 군내 읍면에 야외운동 기구 불용시설 이전설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야외운동기구는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조치함
- 향후 동일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등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

# 12



## 노후화된 운동기구 방지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구에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는 조입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은 그 누구도 이용을 하지 않아 수북이 쌓인 먼지와 녹이 많이 슬어 있는 실정으로 등산로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한 이 운동기구들을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구 ○○동산 입구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2008년경에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화되어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발생한 기구도 있었으나 퇴색 및 녹슨 운동기구를 도색하여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 13



##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근린공원 자전거 거치대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 ○○근린공원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매일 공원에 갈 때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50여대의 자전거 보관공간에 한 두 대만 보관되어 있을 뿐으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물 설치는 예산낭비로 판단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근린공원의 자전거 거치대는 공원 조성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50대 수용)하였으나 인접한 ○○역에 기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64대 수용)가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 일부 거치대만 현 위치에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 설치하는 등 ○○시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시에서는 ○○근린공원 내 자전거 거치대 20대를 이용률이 높은 ○○역사로 이전 설치 완료

Chapter

06

## 일반행정·기타

- 01 공유농업활성화 사업 예산낭비
- 02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방법 개선
- 03 개인 펜션 수영장에 경로당 물 사용
- 04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예산편성 부적정
- 05 지방공기업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
- 06 예산으로 조성한 수목을 개발사업으로 훼손
- 07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홍보 및 운영 미흡

# 01



## 공유농업활성화 사업 예산낭비

### 예산낭비 신고내용



- △△도는 산하 출연기관인 ○○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 공유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음
- 이에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주)를 공유농업 전담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주)는 2020년 햅쌀 사전예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이벤트를 진행하면서,
- 당초 소비자가 구매 예약한 2020년 햅쌀 대신,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홍보용(비매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던 2019년산 쌀로 대체 지급 처리하였으며,
- 또한, 택배를 발송하면서 한 소비자에게 동일한 주소로 1kg 쌀 5봉지를 각각 5건으로 발송하여 예산을 낭비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당초 예약 판매한 상품내역과 동일한 쌀을 재배송하고, 동일 주소지 배송시 둑음 포장하여 택배 발송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 △△도는 '21년 본예산안 편성 시 공유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전액砍감

# 02



##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방법 개선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 각 세대에 배부하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시정소식지를 활용하면 별도의 보고서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는 지금까지 「수도법」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신고인의 의견은 「수도법시행규칙」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2항에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보제공방법 개선이 가능하므로 2019년부터는 시정소식지에 요약본을 수록하고, 수돗물품질보고서를 PDF 등 파일로 제작, 시정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등록해 제공토록 개선할 계획임

# 03

## 개인 펜션 수영장에 경로당 물 사용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군 마을회관 앞 개인 펜션에서 몇 년째 마을회관의 수돗물을 이용해 펜션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있어 예산낭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경로당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 회원회비, 후원금 등 마을자금으로 구성되며, 지하수 사용을 위한 전기요금도 위의 재원으로 지불되고 있음

- 인근 펜션 수영장의 물을 좀 더 빨리 채우기 위해 경로당 회원인 인근 펜션 대표의 요청에 따라 경로당의 지하수를 2015년부터 몇 차례 호스를 이용해 공급해준 바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의 결과로 인근 펜션 수영장에 물을 공급한 만큼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해당 경로당(운영진)에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을 확인받았고, 해당 군청에는 지원 대상인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 04



##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예산편성 부적정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시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에 따르면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가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편성되어 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명당 2백만원 총 53명 1억 6백만원
  -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명예퇴직 연수 2명 2천만원
  -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부부동반 연수 9명 7천 2백만원
  - 퇴직 예정자 부부 동반 연수 12명 4천 2백만원
  - 국제화 시책 유공자 연수 30명 1억 2천 4백만원
  - 국제 도서축제 견학 8명 5천 2십만원
- 기타, 의존재원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청소년 해외연수 인솔, 기초의원 해외연수 및 인솔 등 명세서에 확인된 해외출장 여비 등 연간 약 5억원 집행, 부부동반 여행은 사비로 가는 것이 바람직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시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등 국외연수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국제화여비가 아닌 포상금 목으로 편성하고, 지원 근거가 없는 배우자를 동반한 연수지원 예산도 편성하였음을 확인
- 행안부에서는 포상금으로 편성한 국외연수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따라 조치하고 지원 근거가 없는 배우자를 동반한 국외연수는 배우자를 제외한 공무원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권고

# 05

## 지방공기업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출장 중에 있는 ○○개발공사 관용차량이 ○○시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음
- 근무시간에 장을 본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
- 공적사용을 위해 비품을 구매하러 ○○에서 ○○까지 오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됨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신고인은 ○○개발공사를 도청 직속기관 등으로 오인,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한 건으로 예산낭비 신고함
- ○○개발공사는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출자를 통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여 그 직원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나, 신고인의 취지와 ○○도가 ○○개발공사 감독기관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 ○○개발공사 ○○감사실과 협조로 조사를 실시한 바 업무용 차량 남용 사실이 확인됨
- 이에, ○○개발공사에서는 해당 직원을 징계 처리하고, 업무용 차량 남용으로 인한 연료비 등 일체 경비를 환수하였음
- 또한 ○○개발공사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직원 교육을 실시

# 06



## 예산으로 조성한 수목을 개발사업으로 훼손

### 예산낭비 신고내용



- ○○기념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조성 부지에 있던 수목이 무더기로 잘려 나갔는데도 담당부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기념관 건립 부서는 해당 나무들이 ○○○○조성사업으로 심은 것인지도 모른 채 수목을 벌목하는 등 부서 간 소통이 전혀 없었음
- 벌목된 나무 처리에도 비용을 들여야 해 이중으로 예산낭비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은 빗나무빗자루병 등 병해의 발생으로 실시한 가지치기로 수목 형태가 훼손되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기념관 건립 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수목 벌목으로 일정 부분 예산낭비를 초래함
- 향후 ○○○○사업 수목만이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거될 수목 발생 시 부서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예산 및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 07

##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홍보 및 운영 미흡



### 예산낭비 신고내용



-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은 월평균 일자리 상담 신청자가 10명 내외에 상담자는 3명으로 홍보 및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하위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위 예산집행이 의심됨
- 전문가 초청 창업컨설팅 진행 관련 전문가(프랜차이즈 100여개 창업) 및 이력 공개를 거부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관련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없음

### 신고내용 처리결과



- 신고인(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과 현장점검 및 사업운영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sns를 통한 단순홍보를 벗어나 쿠폰 이벤트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할 예정
- 강사는 재능기부 형태로 초청되어 별도의 강사료 지급은 없었으며,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교육받은 시간에 대한 단순한 확인증 차원으로 사업안내문에 해당 문구를 삭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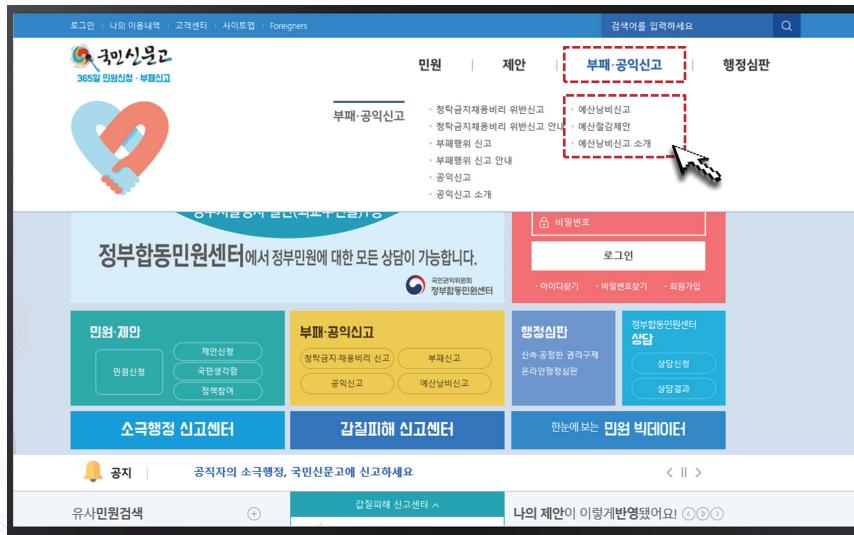
부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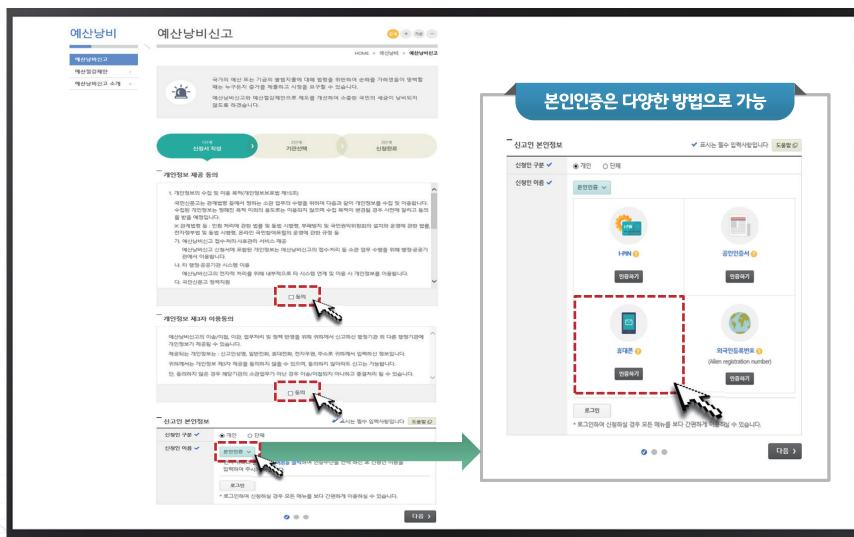
##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신고방법 ①

##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접속, 예산낭비신고(제안) 선택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개인정보 제3자 이용동의 체크 후, 본인 인증 또는 로그인



# 국민신문고 신고방법 ②

## ☞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인증

**KCB**

간편본인확인(앱)

휴대폰본인확인(문자)

이름: 내국인

생년월일: 19 남 여

휴대폰번호: 01055

083119

083119

인증번호: 04:43 재전송

확인

휴대폰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본인확인 끝!  
간편본인확인다운받기

3

## ☞ 신청내용 작성 ➡ 기관선택 ➡ 신청완료

**예산낭비신고**

STEP 01 신청서 작성

STEP 02 기관선택

STEP 03 신청완료

신고내용

제목과 내용 등은 기관에서 접수한 이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보유지 시간은 최장인 경우 120분, 최희망인 경우 180분입니다.  
정보유지 시간 내에 막성을 원료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은 전체용량을 기준으로 30M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 30MB 파일 1개 또는 10MB 파일 5개  
\* 첨부 파일과 신고 사항별로 내용이 조기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일부 할 수 있는 확장자를

기관선택

증명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 교육청   | 공공기관   |         |
|---------|-------|-------|--------|---------|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 · 부산광역시 | · 강서구 | · 금정구 | · 기장군  | ×       |
| · 남구    | · 동구  | · 동래구 | · 부산진구 |         |
| · 북구    | · 사상구 | · 사하구 | · 서구   |         |
| · 수영구   | · 연제구 | · 연도구 | · 중구   |         |
| · 해운대구  |       |       |        |         |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

OO님께서 신청한 신고를 "행정안전부"(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신청

4

# 국민신문고 신고방법 ③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앞



팩스(Fax)

044-204-8964



문의전화

044-205-3720 ~3721

5

- 우편, 팩스 신고 시  
아래 양식의 주요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신청자 정보는 필수!

### 신청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행정안전부 지방예산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신 청 자   | 성 명<br>(명 칭) |     |  | 생년월일<br>(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 연 락 처        | 전 화 |  | 이동전화              |  |
|   | 전자메일         |     |  |                   |  |
| 신청기관명   |              |     |  |                   |  |
|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예산낭비신고 <input type="checkbox"/> 예산절감제안   |              |     |  |                   |  |
| 답 변 방 법 <input type="checkbox"/> 서신 <input type="checkbox"/> 전자메일 <input type="checkbox"/> SMS <input type="checkbox"/> 우편 기타 |              |     |  |                   |  |
| 신고 등 내용   |              |     |  |                   |  |
| 201 .   |              |     |  |                   |  |
| 신청자   |              |     |  |                   |  |



2016 ~ 2020  
**지방예산낭비신고 사례집**

---

발행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별관  
TEL. 044) 205-3720

디자인 및 제작 세종인쇄 TEL. 044) 866-4774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